

의안번호	
의 퇴 인	김원이의원
회 답 일	2024. 11. 21.
추 계 번 호	24B482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1,100만원, 2030년 3억 6,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억 7,700만원(연평균 3억 3,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해역관리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안 제6조제1항)	311	323	335	348	361	1,677	335

주: 1. 해역관리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므로 해당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금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2항 신설(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1항 (실태조사)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제1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해역관리청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조제2항 신설 (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 성과평가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실태조사)	○	(해양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금액 참고
		×	(해양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각 시·도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므로,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표 2]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예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 (1033-305)		14,055	13,352	19,752	18,718
- 실태조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해역의 퇴적물 오염도 상세 현황자료 확보	500	500	500	500

자료: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각 연도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해역관리청²⁾은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할해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구분
 - －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어항, 무역항, 연안항, 환경관리해역
 - － (시·도지사) 영해·내수
 - 참고로 전국의 연안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11개
 - －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제주
- ※ [참고자료 1]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4.10.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 본 추계는 해역관리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 비용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금액을 바탕으로 추계

- 다만,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므로 해당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사업 비용으로 3억원 신규 편성
 - － 현장조사 1권역 200백만원, 결과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100백만원
 - ※ 해양폐기물 관련 예산은 [참고자료 2] 해양폐기물 관리 현황 참고

[표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065-301) 중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년(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065-301)		35,654	36,300	48,229	46,341
－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해양쓰레기 오염 관련 전국단위 조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해양폐기물의 종류별 발생현황 및 주요 오염원, 지역적 분포 등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	—	300 (현장조사1권역 200백만원, 결과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100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각 연도

- 따라서 실태조사 비용은 2025년 기준 3억원 규모로 가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311	323	335	348	361	1,677

주: 1. 해역관리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므로 해당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금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11개 광역시·도, 73개 지자체)]

(2024년 현재 73개)

구분	시·군·구	비고
인천 (7)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5)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7)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전북 (4)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 (16)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경남 (7)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부산 (10)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울산 (4)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 (6)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경북 (5)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해양폐기물 관리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초목류 포함)으로 추정('19년)³⁾

○ 이 중 육상기인은 65%(9.4만톤), 해상기인은 35%(5만톤)으로 추정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섬 지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량 추정자료는 없음

<국내 해양폐기물 수거량>

(단위: 톤)

		2020	2021	2022	2023
해양폐기물(합계)		138,362	120,736	126,055	131,930
종류별	-해안폐기물	111,592	95,725	97,077	96,018
	-부유폐기물	8,558	6,067	6,691	10,630
	-침적폐기물	18,212	18,944	22,287	25,282
기인별	-육상기인	138,362	120,736	126,055	131,930
	-해상기인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해양배출폐기물 발생량>

(단위: 천m³)

	2020	2021	2022	2023	2024.6월
해양배출폐기물 (육상기인)	115.9	166.1	116.6	70.9	71.7

주: 해양배출폐기물은 m³ 단위로 발생량 정보 보유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양폐기물 처리 주체

○ 해안가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유·침적폐기물은 해역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이 수거 중

* 국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가어항, 무역항, 연안항, 환경관리해역
지자체: 영해·내수

3) 출처: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

- 정부는 육지 및 도서지역 해안가 등으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와 해양쓰레기 집하장, 정화운반선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중
- 최근 4년(2022~2025년(안) 간 해양폐기물 처리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년(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065-30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침적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개선 도모	16,870	16,870	20,520	19,670
	바다환경 지킴이	해양쓰레기가 많은 해안에 전담 인력을 연중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및 사전예방을 강화	10,638	9,574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양쓰레기가 많은 해안에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및 사전예방을 강화	—	—	8,331	8,331
	어구부표 보증금제	폐어구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24년부터 통발에 한정하여 시행 예정	300	2,310	9,360	8,417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적인 청항선 운용을 위한 드론 활용	14	14	14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안정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연안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구축	2,550	2,550	—	—
	조사 및 국제협력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해안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업무 대응	2,094	1,794	—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해양쓰레기의 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1,875	1,875	—	—
	민간참여 활성화	민간의 참여 유도 및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문화 정착,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민간단체·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와 커뮤니티 조성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1,313	1,313	—	—
	생분해어구보급	조업중 유실되어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자원 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 구입비 지원	—	—	3,454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내역이관	2,673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년(안)
	자연재난쓰레기 피해복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	2,000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내역이관	2,000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오염·훼손된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사업 및 원인분석·대응 마련을 위한 쓰레기 분포 현황 점검 실시	—	—	4,520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내역이관	4,520
	해양폐기물 관리 위원회 운영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 및 대책을 관련부처·기관간 상호 협력하여 심의·조정 실시	—	—	30	30
	해양쓰레기 실태 조사	해양쓰레기 오염 관련 전국단위 조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해양폐기물의 종류별 발생현황 및 주요 오염원, 지역적 분포 등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	—	300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일반국민, 어업인,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투기 예방 및 수거, 인식개선 등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활성화 지원	—	—	—	400
	소계		35,654	36,300	48,229	46,341
연안관리 (1034-300)	페스티로폼 압축 기 보급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자원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800	800	—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서 배출되어 강 하구 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 처리	1,200	1,200	—	—
	자연재난쓰레기 피해복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1,500	1,500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내역이관	—
	소계		3,500	3,500	—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062-301)	해양쓰레기 정화	해안가 등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	13,596	16,193	18,273	20,295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1063-301)	해양쓰레기 정화	도서·벽지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해양환경개선 및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	1,080	1,450	3,936	4,054
합계			53,830	57,443	70,438	24,34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